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87

발의연월일: 2024. 9. 27.

발 의 자: 박성민·강민국·김대식

안상훈 • 박정하 • 최형두

서일준 · 김상욱 · 이헌승

김정재 • 구자근 • 박성훈

강승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차·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액화천연가스(이하 "LPG"라 함)차량이 감소하고,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업·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주유소의 경우 셀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·사무원·세차원 등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은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·이탈리아·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, 우리나라도 '21년부터 규제특례(규제샌드박스)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여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였고,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·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,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

법률 제 호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1항 단서 중 "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져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
- 2.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
- 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9조(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	제29조(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		
가스 충전행위의 제한) ① 액	가스 충전행위의 제한) ①		
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			
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			
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			
를 충전 받아야 하며, 자기가			
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			
다만, <u>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</u>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	
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	에 해당하는		
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			
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			
<u>정하는</u>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		
니하다.			
<u><신 설></u>	1.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		
	어져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		
	<u>경우</u>		
<u> <신 설></u>	2.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		
	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		
<u><신 설></u>	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		
	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		
	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		
	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